D - 27 - 2021

수소 저장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

2021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 재 현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 인 수○ 개정자 : 전남대학교 화학공학부 장 회

○ 제·개정 경과

- 1997년 7월 화학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1997년 8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2002년 6월 화학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2002년 8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2012년 7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2021년 11월 화학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
○ 관련규격 및 자료

- 미국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29 CFR 1910.103
- 미국 NFPA 50A Standard for Gaseous Hydrogen Systems at Consumer Sites 1999 Edition
- 미국 NFPA 55 Compressed Gases and Cryogenic Fluids Code 2013 Edition
- KS B ISO13985 "액체수소-육상 차량용 연료 저장 용기". 2019
- KOSHA GUIDE P 166 2020 "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"
- KOSHA GUIDE D-42-2021 "수소 벤트스택 및 벤트배관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"
- KOSHA GUIDE M-118 2016 "배관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"

○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1년 12월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P - 27 - 2021

수소 저장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제안개요

I. 개정이유

가연성 가스인 수소를 저장하는 설비에 대한 관련 규격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함.

II. 개정(안)의 주요 내용

- 1. 적용범위 구체적인 제시
- 2. 설계 및 제작에 관한 규격을 구체적으로 제시
- 3. NFPA 55의 수소설비의 운송하역 작업 추가
- 4. NFPA 50A의 변경사항 반영

III. 참조된 규격 및 관련자료

- 미국 NFPA 50A Standard for Gaseous Hydrogen Systems at Consumer Sites 1999 Edition
- 미국 NFPA 55 Compressed Gases and Cryogenic Fluids Code 2013 Edition
- KS B 6750 "압력용기 설계 및 제조일반"
- KS B ISO13985 "액체수소-육상 차량용 연료 저장 용기"
- KOSHA GUIDE P 166 2020 "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"
- KOSHA GUIDE D-42-2021 "수소 벤트스택 및 벤트배관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"
- KOSHA GUIDE M-118 2016 "배관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"

IV. 제정위원회 심의개요

- 제 안 자: 전남대학교 장 희
- 심 의 일: 2021년 11월
- 주요 수정내용: 용어의 정의 추가, 자구 수정

수소 저장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가연성 가스인 수소를 저장하는 설비에 대한 설계,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용량 10 Nm³ 이상의 기체수소 저장용기와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여러 개의 설비 간격이 1.5 m 미만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전체 용량이 10 Nm³ 이상일 때 적용이 가능하지만, 이동식 수소 운반설비 및 기체수소 제조공정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3.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수소저장설비"라 함은 수소를 저장하는 저장용기와 이송배관, 안전밸브 및 제어기기 등 부속설비를 포함한 일련의 설비를 말한다.
 - (나) "저장용기"라 함은 일정한 위치에 고정 설치된 저장탱크와 이동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.
 - (다) "저온의 수소"라 함은 액체수소에서 비등된 차가운 수소를 말한다.
 - (라) "긴급차단밸브"라 함은 원격조작에 의하여 유체의 흐름을 긴급차단 할 수 있는 밸 브를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주요 물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「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.

4. 설계 및 제작

P - 27 - 2021

4.1 수소저장설비

4.1.1 수소저장설비의 설계 · 제작 및 시험

- (1) 수소를 취급하는 용기는 KS B 6750 압력용기 설계 및 제조일반 또는 KS B ISO13985 액체수소-육상 차량용 연료 저장 용기 규격으로 제작되고, 관련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.
- (2) 고정으로 설치하는 용기는 견고한 기초 위에 불연성 지지대로 설치하고, 폭발위험 장소에 해당되면 내화시공을 하여야 한다.
- (3) 이동식 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, 정기적인 검사와 안전보 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(4) 재질 선정

- (가) 수소를 취급하는 저장용기 및 배관의 재질은 최소한 킬드강(Killed carbon steel)을 사용한다.
- (나) 두께 50㎜를 초과하는 킬드강 또는 두께 38 mm를 초과하는 저합금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재에 대하여 초음파탐상시험(Ultrasonic testing)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다) 저장용기 및 배관의 재질로서 주철계 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
- (라) 설계온도가 225℃ 이상인 수소 분위기에서는 KOSHA GUIDE M 108 2018 "화학설비의 재질선정에 관한 기술지침"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질을 선정한다.
- (마) 저온의 수소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온도 요구조건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설계온도에서 충격시험을 만족하는 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(바) 배관, 밸브 및 배관 부속류의 재질은 수소의 압력 및 온도 사용조건에 적합하도 록 KOSHA GUIDE D 41 2017 "배관재질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"을 따른다.

4.1.2 계측기기 등

(1) 저장용기에는 수소의 온도 및 압력 등의 이상상태를 알 수 있도록 계측기기를 설치한다.

P - 27 - 2021

- (2) 온도계는 온도감지기의 보호관이 있는 온도계를 설치한다.
- (3) 압력계 눈금판의 최대치는 설계압력의 1.5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로 한다.
- (4) 건물내에 수소저장설비가 설치된 경우 KOSHA GUIDE P 166 2020 "가스누 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"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상부 또는 환기구 부근에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하고 경보는 운전제어실 또는 근로 자가 상주하는 곳에 수신되도록 한다.
- (5) 수소설비의 제어 및 작동장치는 캐비넷 또는 하우징에 수소 적체가 최소화 되도록 환기가 되어야 한다.
- (6) 밸브, 감압기, 계측장비 등은 제조자 또는 수소공급자가 수소용으로 권장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- (7) 이동식 수소운반설비는 상하차 작업을 할 때 등전위 접지를 할 수 있도록 접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8) 저장설비 주위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4.1.3 저장탱크의 지지대

저장탱크는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는 고정기초 위에 불연재료의 지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.

4.1.4 저장용기의 표지 및 도장

- (1) 저장용기에는 수소 표지를 부착하고 주위 배관에도 알아보기 쉬운 곳에 "수소"표지를 부착한다.
- (2) 탄소강으로 제작된 저장용기 및 부속설비는 부식 방지를 위한 도장을 한다.

4.2 압력방출장치

- (1) 수소를 취급하는 용기는 관련 규격에 적합한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안전밸브에서 방출되는 수소는 KOSHA GUIDE D-42-2012 "수소 벤트스택 및 벤트배관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"에 따라 안전하게 방출되어야 한다.
- (3) 압력방출장치와 배관은 작동시 습기가 응축, 동결 등으로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
P - 27 - 2021

4.3 배관

- (1) 배관, 튜브 및 이음쇄는 사용 온도 및 압력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2) 배관설비는 KOSHA GUIDE M-118 2016 배관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른다.
- (3) 수소저장 및 취급설비는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, 물리적인 손상 및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.
- (4) 가스킷 또는 나사산 연결구 등에 사용하는 밀봉재(Sealant)는 수소 사용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.

4.4 긴급차단밸브

- (1) 저장용기의 인입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여 저장용기로부터 수소가 역류하지 않도록 한다.
- (2) 저장용기에서 수소를 연속적으로 반응공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응공정의 이상시 수소를 긴급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고, 원격작동스위치는 저장용기 외면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.

4.5 압축설비

- (1) 압축기는 토출측에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. 복수 단수의 압축기는 단과 단사이에도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자동으로 운전하는 압축기는 흡입과 토출 측에 자동정지 제어어장치를 설치하여 야 한다.
- (3) 자동으로 정지하는 제어회로는 안전정치 후, 수동으로 작동하거나, 재설정(reset) 할 때까지 정지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(4) 압축기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차단밸브를 설치하고, 토출 측에는 수소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야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5) 압축기의 기초는 관련 법에 따라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.
- (6) 비상정지설비가 필요한 경우, 비상정지 수위치를 작동하면 모든 압축기기 정지하여야 한다.

P - 27 - 2021

- (7) 압축기의 토출압력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8) 이송배관 및 압축기는 차량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
5. 설치 등

- (1) 저장용기, 배관, 밸브 및 계측기기 주변에는 안전통로 또는 계단을 설치하여 운전 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.
- (2) 압력조절밸브 후단 배관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저장용기의 인입관이 신축호스(Flexible hose)로 된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 고정 걸이를 갖추어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고정시킨다.
- (4) 저장용기에 수소를 충전할 때에는 충전 전에 전기적으로 등전위 접지를 하여야 한다.
- (5) 수소저장설비의 주위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표지를 부착한다.
- (6) 저장용기, 배관 및 그 부속설비는 사용전 최대 사용압력에서의 시험을 통하여 수소의 누설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.

수소 - 가연성가스 금 연 화기접근 금지

6. 수소저장설비의 위치 및 안전거리

- 6.1 일반적 요구사항
 - (1) 저장용기는 운반차량 및 작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.

P - 27 - 2021

- (2) 수소저장설비는 지상에 설치한다.
- (3) 상부에 설치된 전력선의 파손으로 수소저장설비가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.
- (4) 수소저장설비는 인화성 액체 및 산소를 포함한 산화성 물질의 배관 또는 다른 가 연성 가스 배관과 인접하지 않도록 한다. 다만, 수소배관과 인화성 액체 배관 사이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(5) 수소저장설비와 인화성 액체 저장시설이 인접해 있을 경우에는 수소저장설비의 위치가 인화성 액체 저장시설 보다 높도록 한다. 다만, 인화성 액체 저장시설에 방 유제 또는 차단벽을 설치하고 바닥을 경사지게 하여 인화성 액체가 수소저장설비 부근에 모이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(6) 수소저장설비 주위에는 차량충돌 방지턱을 설치한다.

6.2 특수요구사항

6.2.1 위치의 우선순위

수소저장설비는 안전상 다음의 위치 우선순위로 설치하여야 한다.

- (1) 옥외설치
- (2) 독립건물에 설치
- (3) 건물내의 특수실에 설치(저장용기의 용량이 최대 425m³ 까지 허용)
- (4) 특수실이 아닌 일반 건물내 다른시설과 혼재하여 설치(저장용기의 용량이 $85m^3$ 이하만 허용)

6.2.2 옥외

옥외는 건물 외부 또는 비바람으로부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지붕과 최대 2면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서 이들 벽체의 구조는 콘크리트 등 방폭벽으로 하고, 지붕은 가변운 불연재료이어야 한다.

6.2.3 독림건물

(1) 독립건물의 재질은 불연재료로 한다.

P - 27 - 2021

- (가) 벽체의 구조는 콘크리트 구조 등 방폭벽으로 한다.
- (나) 지붕은 불년재료로 한다.
- (2) 창 또는 문은 비상사태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3) 독립건물 내에는 다음과 같이 환기설비를 설치한다.
 - (가) 환기설비의 배출 개구부는 지붕 또는 외벽의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.
 - (나) 환기설비의 공기흡입 개구부는 외벽에 설치하되 바닥높이에 설치한다.
 - (다) 공기흡입 및 배출 개구부의 면적은 실내용적 30 m²당 0.1 m²로 한다.
 - (라) 배출 개구부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대기중의 안전지역으로 배출한다.
- (4) 독립건물에는 다음과 같이 폭발방산구를 설치한다.
 - (가) 폭발방산구는 외벽 또는 지붕에 설치하여야 한다.
 - (나) 폭발방산구의 방출면적은 실내용적 1 m³당 0.1 m² 이상으로 한다.
 - (다) 폭발방산구의 재질은 패널, 동일두께의 유리 등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건물내의 압력이 1.2 kPa에 도달하면 파열되도록 한다.
- (5) 독립건물 내에는 점화원이 되는 가열체 및 화염 등이 없도록 하며 난방은 스팀, 온수 등 간접방법으로 한다.

6.2.4 건물내 특수실

- (1) 건물내 특수실은 다음의 구조로 한다.
 - (가) 내부벽 또는 칸막이벽은 건물 바닥에서 지붕까지 완벽히 막아야 하며 화재시 2 시간 동안 화염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.
 - (나) 건물내 다른실로 통하는 개구부가 없어야 한다.
 - (다) 창문 및 출입문은 외벽에 설치하며 비상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.
 - (라) 창문은 금속제 창틀에 방화유리를 사용한다.
- (2) 특수실의 환기설비는 6.2.3 (3)항에 따라 설치한다.
- (3) 특수실에는 6.2.3 (4)항에 따라 폭발방산구를 설치한다.

P - 27 - 2021

(4) 특수실내에는 점화원이 되는 가열체 및 화염 등이 없도록 하며 난방은 스팀, 온수 등 간접방법으로 한다.

6.3 안전거리

- (1) 옥외 수소저장설비로부터 노출대상 및 형태에 따른 안전거리는 저장용기의 용량을 기준하여 <표 1>에 따르도록 한다.
- (2) 용량 85㎡ 미만의 수소저장설비가 다른 시설물에 노출되면서 동시에 다른시설물 과 동일 건물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취한다.
 - (가) 6.2.3 (3)항에 의한 환기설비의 설치
 - (나) 인화성 액체 및 산화성 물질로부터 6m의 안전거리 유지
 - (다) 다른 가연성 가스저장소로부터 15m의 안전거리 유지
 - (라) 공기압축기 및 냉방 또는 환기설비의 공기흡입 개구부로부터 15m의 안전거리 유지
 - (마) 낙하물 방지시설의 구비
- (3) 용량 85 m³ 이하의 수소저장설비가 다른 시설물에 노출되면서 동시에 동일 건물내에 2개 이상 설치되는 경우에는 (2)항의 안전조치 이외에 각 수소저장설비간 15m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.

<표 1> 옥외 수소저장설비로 부터의 안전거리(단위: m)

수소저장설비로부터 노출대상 및 형태		저장용기의 용량		
대 상	형 태	85m³ 미만	85~425m	425m³ 초과
건물 또는 건축물	- 불연성 재질이 아닌 일반 재질의 건물	3	7.5	15
	- 스프링클러를 갖춘 불연성 재료건물	0	1.5	1.5
	- 스프링클러를 갖추지 않은 불연성 재료건물	0	3	7.5
	- 스프링클러를 갖추지 않은 내화구조 건물	0	1.5	1.5
지상의 인화성	- 4000 이하	3	7.5	7.5
액체 용량(ℓ)	- 4000 초과	7.5	15	15
지하의 - 4000	- 저장탱크	3	3	3
인화성 이하	- 주입구 또는 벤트	7.5	7.5	7.5
액체용량 - 4000	- 저장탱크	6	6	6
(ℓ) 초과	- 주입구 또는 벤트	7.5	7.5	7.5
수소이외의 가연	- 425m³ 이하	3	7.5	7.5
성가스	- 425m³ 초과	7.5	15	15
가연성고체	종이, 톱밥 등	15	15	15
화기 및 점화원(전기적 점화원 포함)		7.5	7.5	7.5
공기압축기, 냉방 및 환기설비의 공기 흡입구		15	15	15
사무실		7.5	15	15
주차장		4.5	4.5	4.5

다만, 수소저장설비와 대상물과의 사이에 화재 발생시 2시간 동안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방화벽과 같은 보호구조물이 있는 경우는 <표 1>의 안전거리 적용을 제외한다.

7. 운송하역 작업

- (1) 하역작업장은 다음과 같이 차량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 - (가) 파손되기 쉬운 압축가스 실린더, 컨테이너 및 탱크 등의 저장설비는 외부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(나) 차량의 진출입시 고정설비와 충돌방지를 위하여 1 m 이상의 콘크리트 방호벽, 말뚝 등의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
P - 27 - 2021

- (다) 방호장치는 저장탱크와 1.5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항야 한다.
- (라) 작업중 차량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목을 비치하여야 한다.
- (2) 하역을 할 때 연결부는 벌크 수소 압축가스 저장설비에 주어진 안전거리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.
- (3) 운반차량에서 수소 압축가스 저장설비로 이송할 때는 차량을 정지시키고, 정지브 레이크 작동과 정지목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이동식 수소공급장치는 수소가 공급장치에서 배출되기 전에 수소압축가스 저장장 치와 연동장치를 활성화시켜 비상시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(5) 연결부를 해체할 때는 내부의 압력을 감압할 수 있도록 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하다. 이 때 방출되는 수소는 수소배출설비에서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.
- (6) 하역작업장 주위에 "화기사용금지" 등의 안전보건표지판을 설치하고, 하역작업을 할 때는 작업장 주위 7.5 m 이내에서 용접, 흡연, 정전기 등의 점화원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, 제전복을 착용하여야 한다.
- (7) 수소 누출 또는 화재 발생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,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긴 급차단장치를 작동시켜 누출을 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다. 누출이나 화재의 원인이 완전하게 확인되고, 제거되지 않으면 하역작업을 할 수 없다.
- (8) 수소저장설비의 운전에 필요한 안전운전지침은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운전장소에 비치·유지한다.

8. 정비 · 유지관리

- (1) 수소저장설비의 성능은 안전한 조건으로 유지한다.
- (2) 안전밸브는 1년에 한번씩 방출시험을 통하여 설정압력과 그 오차범위 내에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고 기록을 유지한다.
- (3)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6개월에 한번씩 표준가스로 설정농도와 그 오차범위에서 작동되는지를 시험·확인하고 기록을 유지한다.
- (4) 저장용기는 1년에 한번씩 부식상태, 피뢰접지 및 등전위 접지 상태를 점검하고 기 기의 점검정비 이력서에 기록을 유지한다.

지침 개정 이력

- □ 개정일 : 2021.10.00.
 - 개정자 : 전남대학교 화학공학부 장 희
 - 개정사유 : 가연성 가스인 수소를 저장하는 설비에 대한 관련 규격 NFPA 55, KS R ISO23273, KS B 6750 등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기술지침을 개정하여 사업장에서 이를 활용토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.
 - 주요 개정내용
 - 적용범위 구체적인 제시
 - KS B 6750 변경에 따른 4.1.1 수소저장설비의 설계·제작 및 시험 수정
 - NFPA 5 변경에 따른 7. 운송하역 작업 추가
 - NFPA 50A 변경에 따른 4.4, 4.3 수정의 변경사항 반영.
 - 참조된 규격 및 관련자료
 - 미국 NFPA 50A Standard for Gaseous Hydrogen Systems at Consumer Sites 1999 Edition
 - 미국 NFPA 55 Compressed Gases and Cryogenic Fluids Code 2013 Edition
 - KS B 6750 "압력용기 설계 및 제조일반"
 - KS B ISO13985 "액체수소-육상 차량용 연료 저장 용기"
 - KOSHA GUIDE P 166 2020 "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"
 - KOSHA GUIDE D-42-2021 "수소 벤트스택 및 벤트배관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 술지침"
 - KOSHA GUIDE M-118 2016 "배관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"

_